

II. 유의사항 및 안내문

01 반드시 지정된 날에 본인이 전송(또는 출석)해야 합니다.

○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전송(또는 출석)해야 합니다.

- 실업인정신청서는 국외전송 및 대리전송 불가

○ 지정된 날에 전송(또는 출석)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.

※ 1차 집체교육 지각 시 입실불가

- 단, 부득이한 사유(면접, 질병, 직계존비속 경조사 등)가 있을 경우는 증빙자료 지참하여 담당 창구에서 실업인정일 변경신청 바랍니다.

-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불출석 시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 변경(사유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) 가능합니다. 2회 불출석 시 해당 구직급여 부지급(소멸)

○ 취업으로 인해 지정된 날에 전송(출석)하지 못한 경우,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취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취업일 전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출기한 2개월 초과 시 구직급여 소멸)

- 취업한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전화통보 →

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(www.ei.go.kr), 우편, 팩스, 내방을 활용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(자영업 개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)+실업인정신청서를 반드시 제출

02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.

○ 적극적 구직활동 종류 및 증빙자료

- 사업장 면접시 : 명함만 제출(X), 모집공고문+명함(O), 면접확인서(O)

- 인터넷 입사지원 시 : 모집공고문+지원확인서류

- 우편, 팩스 등 입사지원 시 : 모집공고문+송수신확인물 (우편영수증, 팩스전송내역 등)

○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(구직급여 부지급)

-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직활동하는 경우
-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하는 경우
- 헤드헌터업체 등에 구직등록만 하는 경우 (단, 민간직업소개소 구직등록 시 1회 구직활동 인정)
- 구직수요가 없거나 구인이 종료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명함만을 가져오는 경우
- 본인의 직종과 무관하게 지원한 경우
- 경력, 연령, 기능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등

○ 1차 실업인정

- 전원 출석 원칙, 설명회장 입실

○ 2, 3차 실업인정

- 인터넷형 : 해당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1회이상 구직활동내역을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에서 전송 (전송시간 00:00~17:00)
- 집체형 : 담당창구 방문 대신 설명회장 입실, 집체교육 참석한 경우 1회 구직활동 인정
- 방문형 : 담당창구 방문 대신 중회의실(2층) 입실.

○ 4차 실업인정

- 전원 출석 원칙, 4주 1회 이상 구직활동 제출, 반복수급자의 경우 질문지 작성 제출

○ 5차 실업인정 이후(인터넷 실업인정 가능)

-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 제출, 출석형은 창구 방문
- 소정급여일수 150일을 초과하는 장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4차 실업인정일 및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실업 인정일에 반드시 센터에 전원 출석하여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.

○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

-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에 해당 될 경우 구직급여 부지급, 출석형 전환, 재취업촉진위원회 출석 의무가 부과 됩니다.
- 특히,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자, 반복수급자,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 부지급 이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필수 실시 후 구직급여 지급

○ 재취업촉진위원회

- 특별히 취업지원이 필요한 경우 실업인정일 이외에도 고용센터의 「재취업촉진위원회」에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
03 아르바이트를 포함한

모든 취업 시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.

(일한 날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,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수가 줄어듭니다.)

○ 근로시간, 소득여부,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일을 한 경우에는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- 공사현장 일용직, 아르바이트, 시간강사, 번역작업, 연구프로젝트 참여, 프리랜서 등으로 일한 경우도 포함

○ 회의참석 수당 등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(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되지 않음)

○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일한 날을 제외하고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.

04 재취업한 경우라도 수급기간 내에 다시 실직한 경우에는 는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(방문)를 하여야 합니다.

○ 재실업신고일부 1~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지정

- 구직급여는 재실업신고일부 남은 수급기간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.

05 조기재취업수당

○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사업주에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업일(사업개시일)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액의 1/2를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- 대기기간(실업신고일로부터 7일)이 지난 후, 재취업일(사업개시일)기준으로 구직급여일수가 1/2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 또는 자영업업을 개시할 것.

※자영업인 경우 사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지급.

※청구방법: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를 제출할 것

○지급제외

- 최종 퇴사한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

- 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

- 대기기간(실업신고일로부터 7일)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달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/2미만인 경우

- 재취업일(사업개시일)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

- 12개월 내에 근로기간(사업영위 기간)의 단절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

※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음

○자영업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① 자영업준비계획서 제출

② 자영업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

③ 실업인정 시 신고한 자영업업을 개시

※ 보험설계사, 다단계판매원, 공인중개사, 프리랜서, 학원강사, 채권추심원, 학습지교사, 인터넷쇼핑몰 등 포함

06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구직활동을 못 할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.

○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 등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단,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퇴사 신고와 관련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등은 근로복지공단(대표번호:1588-0075) 또는 수급자격 창구로 문의 바랍니다.

※ 구직등록(워크넷) 및 인터넷 실업인정신청 관련문의 :☎ 1577-7114

07 개별연장급여

○적극적 취업의사를 가지고 구직 중이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60일 연장하여 실업급여(구직급여의 70% 또는 최저임금액의 90% 중 높은 금액)을 지급 합니다.

①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

②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,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장애인,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, 소득이 없는 배우자 또는 학업중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인 부양가족이 있는 자

③ 급여기초임금일액(평균임금)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

○구직급여 수급기간 만료일 한 달 전부터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
08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면 절대 안됩니다.

○부정수급 유형으로는

① 수입·소득·일당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

②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

③ 소득이 발생하였어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

④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

⑤ 취득일, 상실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

⑥ 허위·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

등이 해당됩니다.

○부정으로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

① 부정수급액 반환 및 그 금액만큼 추가 징수

② 부정수급한 날 이후 구직급여 중지

③ 형사처벌(1년 이하 징역 또는 1200만원 이하 벌금)

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